



위생용품의 종류



종류	시행전 소관법률
세척제, 행굼보조제	(구)공중위생법(복지부)
위생물수건	
일회용 이쑤시개	
일회용 종이냅킨	
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	
일회용 컵	식품위생법(식약처)
일회용 숟가락, 일회용 젓가락	
일회용 포크, 일회용 나이프	
일회용 빨대	
화장지	
일회용 면봉(어린이용, 성인용)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(산업부)
일회용 기저귀 (어린이용, 성인용)	
일회용 행주, 일회용 타월	-
일회용 팬티라이너	
*의약외품 제외	
건티슈	
*최종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	



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유통을 위해



국가는 위생용품 안전을 관리하고!



영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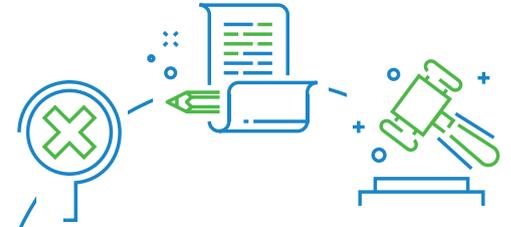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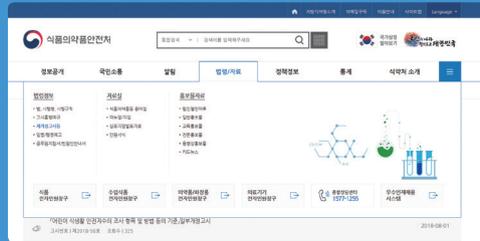
소비자는 제품의 표시기준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!

위생용품에 관한 주요 내용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!

〈국가법령정보센터〉홈페이지
<http://www.law.go.krr> ▶ 위생용품 관리법

〈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〉
 문의 02-2133-7678

〈식품의약품안전처〉 홈페이지
<http://www.mfds.go.kr> ▶ 법령 · 자료 ▶ 제 · 개정고시 등



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안내

국민의 위생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
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
위생용품 관리법[시행 2018.4.19]





위생용품의 표시기준

판매·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,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위생용품의 품목에 따른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.

또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·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제조·가공·소분·수입·위생처리·저장·진열·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


표시사항

- "위생용품"의 글자
- 성분명/원료명/재질명
- 제품명
- 위생용품의 유형
-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-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
- 내용량(중량, 용량, 수량, 길이 등)
-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
- 제조연월일/유통기한
- 재활용에 대한 표시
- 기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

※ 「위생용품 표시기준」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26호 위생용품 품목별 개별표시사항에 따른



위생용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

위생용품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·과대·비방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
- ▶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·광고
- ▶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·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- ▶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의 검사결과를 이용한 표시·광고
- ▶ 화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·광고
- ▶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/보증/추천 등의 내용을 사용, 유사내용 표시·광고
- ▶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·광고

한 눈에 보는 영업자 준수사항



구분	제조업	수입업	처리업
영업신고	○	○	○
수입신고	×	○	×
자기품질검사	○	×	○
품목제조보고	△	×	×
생산실적보고	○	×	○
위생교육	○	○	○
표시 기준	○	○	○
관할기관	시·군·구	지방식약청	시·군·구

△ : 세척제, 행균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 5개 품목에 해당



위생용품의 벌칙

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- ▶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한 경우
- ▶ 개업·변경·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등의 사항을 영업신고 하지 않은 경우
- ▶ 영업자의 위생적인 관리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▶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
- ▶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·대여한 경우
- ▶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·대여한 경우
- ▶ 위생용품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

경과조치기간 및 유예기간 적용

위생용품 영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

- 위생용품의 제조, 가공, 소분, 위생처리 업자는 2019년 4월 18일까지
- 위생용품의 수입업자는 2018년 10월 18일까지
* 단, 일회용팬티라이너, 건티슈는 2019년 10월 18일까지

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기간

- 2020년 4월 18일까지